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언론 발표문)

나. 민청학련사건

다. 인혁당재건위사건

II. 조사내용 2005. 12. 7

1. 자료 조사 및 분석

가. 국정원 보유자료

나. 타기관 보유자료

다. 일반자료

2. 관련인물 면담조사

가. 사건 당시 증형직원

나. 사건 관련자

다. 사건 당시 관련 국정기관 직원

국정원과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차 례

III. 조사결과	1
인혁당사건(1964년)	1
I. 개요	1
1. 조사목적	1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1
가. 1964년 인혁당사건	1
나. 민청학련사건	2
다. 인혁당재건위사건	2
II. 조사내용	3
1. 자료 조사 및 분석	3
가. 국정원 보유자료	3
나. 타기관 보유자료	4
다. 일반자료	5
2. 관련인물 면담조사	5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5
나. 사건 관련자	5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5
라. 기타	6
6) 재판과정에서 외교안보위 참여권은 보장되었는가	24

Ⅲ. 조사결과 6

1. 인혁당사건(1964년) 6

가. 시대적 배경 6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7

다. 사건의 처리 8

라. 의혹 및 쟁점 10

1) 소위 인혁당은 實在했는가 10

2)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 10

3) 인혁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 13

2. 민청학련사건 15

가. 시대적 배경 15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16

IV 다. 의혹 및 쟁점 18

1) 민청학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였는가 18

2) 민청학련은 용공·이적 단체였는가 19

3)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21

4) 민청학련은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21

5)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등 인권침해가 있었는가 24

6)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는가 24

3.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사건 25

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수사당국의 주장 25

나. 의혹 및 쟁점 26

1)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했는가 26

2) ‘인혁당 재건위’는 국가변란을 기도했는가 28

3) ‘인혁당 재건위’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는가 28

4) ‘인혁당 재건위’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는가 29

5)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30

6) 공판조서는 변조되었는가 31

7) 사형집행을 둘러싼 의혹 33

8) 고문흔적은폐를 위해 시신을 탈취했는가 37

다. 소결 38

IV. 결론 및 의견 40

1. 결론 40

2. 의견 42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가. 1964년의 인민혁명당 (이하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8·15이태리 불리세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체임펄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I. 개요

1. 조사목적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세칭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민청학련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1974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 이들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고문 등을 통해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 특히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사건’의 경우 8명의 피고인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처형되어 사법살인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진실을 밝혀 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과 더불어 강구함은 물론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범한 권력남용과 인권 침해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여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가. 1964년의 인민혁명당 (이하 인혁당)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나.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 민청학련이 조총련·인혁당 재건위 등의 배후조종을 받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7명에게 무기징역·1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1심기준)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

다.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고

-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1, 2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 8명이 무기징역, 4명이 징역 20년, 3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형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 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라. 이들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조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II. 조사내용

1. 자료조사 및 분석

가. 국정원 보유자료 : 459건 67,223쪽

-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사항이 포함된 각종 보고서·수사 및 공판 기록 일부·기타 참고자료 등 459건 67,223쪽을 면밀 분석
- 국방부 자료로 '탈북유인물 사건' 등 6건 1,481쪽
- 인혁당사건과 관련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 등 관련 문서가 발견돼 64년 8월 14일 발표문에서 등장하는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의 해소에 참고할 수 있었고

-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초점」, 「수사지침」 등의 문서가 발견돼 ‘조총련과 일본공산당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의혹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서도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내사결과보고」라는 문서가 발견돼 ‘공판조서 변조’ 의혹해소에 참고가 되었음
-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극히 일부 자료들만 보존돼 있어 이들 사건과 관련한 정권 내부 및 중앙정보부 수뇌부의 의도 및 개입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음

나. 타기관 보유자료 : 문서 164건 45,968쪽, 녹화테이프 25개

- 국가기록원 자료로는
 -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장석구 사건기록’ 등 80건 22,165쪽, 참고인 조사 녹화테이프 25개
 - 기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료 24건 2,214쪽
 - 특히 관련자들의 조사 녹화테이프들은 관련자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었음
- 서울지검 자료로 ‘인혁당사건기록’, ‘김배영 사건기록’ 등 51건 20,064쪽
- 국방부 자료로 ‘불온유인물 사본’ 등 6건 1,481쪽
- 국회 자료로 국정감사회의록 등 50쪽

- 1964년 인혁당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에 대해 당시 국회국정감사반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문의혹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음

○ 기타 법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서 7쪽 검토

다. 일반자료: 82건(권) 6,490쪽

1. 인혁당사건 (1964년)

- 「사법살인」 등 관련책자 14권 4,800쪽, 월·주간지 25건 800쪽, 신문 및 방송자료 43건 120여쪽, 관련 논문 10건 500쪽 등 기타자료 600쪽 등 공개되어 있는 일반자료에 나타난 각종 의혹 및 주장을 검토하여
-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건관련 의혹사항과 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국가기관의 자료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음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 이용택, 윤종원 등 8명

나. 사건 관련자

- 김금수, 전창일, 유인태 등 18명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 전재팔, 조규철, 문상익 등 19명

라. 기타

- 김정강 등 3명

Ⅲ. 조사결과

1.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가. 시대적 배경

-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원대복귀를 약속한 이른바 혁명공약과는 달리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회담은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정권 차원의 이해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당시 박정희가 표방하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관을 앞세우고 시위에 나서자, 정부는 이를 체제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정국의 긴장감은 높아져 갔다.

-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자 정부는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위기상황에서 학생운동의 배후로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1964년의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와 같이 6·3사태라는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아 반정부학생시위의 파장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발표된 공안사건이다.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 인혁당은 1962년 1월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본명 우홍선)·김배영·김영광·김금수·도예종·허작·김한득·박현채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 ‘북괴 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新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 1962년 5월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북괴 로동당’에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했고, 1962년 10월에는 교양위원인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하였으며
 - 도예종은 전국의 당 조직 건설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직장내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 1964년 2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 중앙당 시위지도부는 시위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 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다. 사건의 처리

-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학생시위의 배후를 파헤쳐 북괴와 직접 연결된 대규모 지하당을 적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서울지검으로 송치하였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용훈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20여 일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 공안부 검사들은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며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였다.
 - 그러자 검찰총장 신직수(전 중앙정보부 차장), 서울지검장 서주연 등 검찰수뇌부는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당직검사(정명래)를 시켜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했고
 -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자신들의 불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 한편, 검사들의 '항명' 파동에 이어 이 사건에 대한 고문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인혁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기소된 26명 중 14명은 공소를 취하·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 결국 사법부는 인혁당사건에 대해

- 1965년 1월 20일 1심(재판장 김창규)에서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복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했고

- 1965년 6월 29일 항소심(재판장 정치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 대법원은 1965년 9월 21일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학생운동의 배후에 대규모 지하 반국가단체로서가 아니라 반공법 상의 단순 고무·찬양죄 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라. 의혹 및 쟁점

1) 소위 인혁당은 實在했는가?

-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이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당명을 ‘인혁당’으로 정했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정당’으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으나, 과연 인혁당이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하정당으로 실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진실위」의 조사 결과 이들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사법당국이 판단한 것처럼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민혁명당이란 명칭은 여러 명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강령·규약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 소위 「인혁당」은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 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

2)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

-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다.

가)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

- 중앙정보부의 여러 내부분건과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면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4·19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1919년생)이다.
- 김상한이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월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 등 중정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상한은 남파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 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다.
- 대북정보기관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 소지자로서 북파 후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교수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시키면 공작성과거양이 기대’된다고 김상한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정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남파간첩 김배영 문제

- 1964년 8월 14일자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인혁당 창당위원 김배영은 당지도부에 의해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 차” 1962년 10월 일본을 경유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김배영이 월북한 것은 국내에서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고 난 뒤 3개월 후인 1964년 11월의 일로, 1964년 8월에 중앙정보부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김배영이 월북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친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 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1971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인가?
-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보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반대 데모의 배후에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인혁당과 학생운동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오병철 등은 학생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 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가 북한은 물론이고 인혁당의 지령이나 조종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 학생지도책으로 발표된 김경희는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학생데모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 19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인혁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

○ 인혁당 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일명 이상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판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

○ 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전문위원 문상의 (당시 검사)도 조사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하였다.
- 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 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결과 발표, 국회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에서 확인 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고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검찰의 당시 수사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진실위」가 확인했음)
-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 있으나
- 검찰이 고문 의혹이 제기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의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민청학련 사건

가. 시대적 배경

-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개헌 이후 197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였으나,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의해서는 1975년에 권력을 내놓아야 했다. 이에 그는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여 불법적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 정치권이나 재야 민주세력은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의 갑작스럽고 폭압적인 유신 쿠데타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숨죽인 채 상황을 관망했다.
- 그러나, 1973년 10월 2일 서울 문리대생 300여명은 그 간의 침묵을 깨고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단행했다. 정부는 학생 2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학생시위는 10월 4일 서울법대, 10월 5일 서울상대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 유신정권은 언론의 통제 위에서 유지될 수 있었으며, 1973년 10월 2일 이후 언론은 정권의 통제 때문에 학생시위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11월 12일 CBS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방송·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모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이 번져가면서 재야민주인사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1973년 12월 24일 함석헌·장준하·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명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 이에 당황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 2호를 발동하였다.

○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뿐 아니라, 이 조치를 비방한 자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제1호의 6항은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규정했으며, 긴급조치 제2호는 군사법정 설치를 위한 비상군법회의 규정을 담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저항의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은 새 학기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연합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의 연락체계를 만들어 갔고, 1974년 3월 신학기 들어 경북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 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일명 삼민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2)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한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 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등을 할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 민청학련을 조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 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o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유인태 등 평소

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 서도원, 도예중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 조총련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 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기도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이철 등 7명 사형,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

○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 기각하고

○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 사건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

다. 의혹 및 쟁점

1) 민청학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였는가?

○ 민청학련이란 명칭은 1974년 3월 27일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김병곤·정문화·황인성 등이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인성의 제안으로 붙인 명칭으로

-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경북대 등은 각각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 대신 각 대학이 스스로 정한 「반독재투쟁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연합시위를 하기 위한 연락망은 있었지만, 단일한 명칭과 강령, 규약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었고, 국가변란을 기도할만한 실행력을 지닌 하부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할만한 준비는 더더욱 없었다.
- 따라서 민청학련은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2) 민청학련은 용공·이적 단체였는가?

-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의 투쟁목표가 정부 전복 후 노농정권을 세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그 유인물 및 선전내용이 북한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 중앙정보부의 수사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 한 예로 1974년 4월 21일자 <수사상황보고 92보> 에 따르면
 -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신원조사와 환경 수사에서는 “(1) 가족 중 부역자 혁신계, 월북자, 행방불명자, 전과자를 찾아내고, (2) 본인의 평소 탐독한 공산서적, (3) 북괴 대남방송 청취 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으며
- 민청학련의 투쟁방법과 목표에 대한 수사지침은 “적화 통일 전략 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학생과 노동자·농민·영세시민을 선동, 폭도화하여 폭력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중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으며
- 배후관계와 관련해서는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지령이다. 국내 혁신세력의 조종 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괴 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 수사 이전에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 또 수사당국이 민청학련 관련자의 친북용공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 학생들이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은 분단 이전인 1920년대부터 불리던 독립군 추도가(날아가는 까마귀야, 시체보고 울지 마라)를 부른 것으로서, 이 노래는 남쪽에서 간행된 독립군가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다.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청학련의 이름으로 추진된 학생시위의 목적은 수사당국의 주장과 같이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3)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 당시 중앙정보부와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 기획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조종을 할 여지가 없었으며,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서 4·3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4) 민청학련은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원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유인태, 이철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일본공산당원이었던 하야가와와 소개로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곽동익의 지령을 받고 학생들에게 접근한 다찌가와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폭력혁명 선동과 자금제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 되는 부분 삭제”하라고 하고
 -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모의과정·목표배후·자금·활동·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고
 -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기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 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시다’라고 표현키로 하고”
 -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은 정부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는 되지 않으니 다찌가와·하야가와는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등 선동하는 것을 뚜렷이 표시하도록 했다.

○ 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는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1) 다찌가와 · 하야가와 등 두 일본인이 이철, 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 · 사주 · 방조하였다는 점

(2) 다찌가와 · 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 · 유인태가 공산주의였다는 점

(3) 다찌가와 · 하야가와 등이 이철, 유인태 등 학생운동가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와 접근한 상황이었으며

(4) 다찌가와가 이철 · 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 · 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함으로써 다찌가와 · 하야가와 등이 정부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 중앙정보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으로 지목한 곽동익은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김대중 구출운동의 핵심인물로서, 곽동익과 다치가와는 서로의 관계가 취재원과 기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이들 일본인들이 유인태 등과의 접촉과정에서 ‘무장’ 운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한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조작된 것이다.

5)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가?

○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잠 안 재우기·모욕과 협박 등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가해졌다.

○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고문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교도관·파견경찰·검찰서기 등)역시 고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6)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는가?

○ 민간인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전이나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군사법정인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 자체가 곧 유신독재의 폭력적 인권침해의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

- 특히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 피고인 48명에 대해 인정신문만을 한 뒤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며 법정심리, 변호사의 반대신문,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기회를 봉쇄한 채 대부분의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 김지하 등 11명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가 애국학생에 대하여 검찰측이 사형과 무기를 구형한 것은 사법살인행위로서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자 그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군사재판은 유신체제 하의 군법회의법조차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변호사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함으로써 변호인의 변론권을 짓밟았다.
- 변호인조차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군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수사당국의 주장

-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

○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 “민청학련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 민청학련의 배후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추가발표에서 서도원, 도예종 등은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인혁당 재건위 사건)하였으며

○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공판은 군법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 1974년 7월 11일과 13일 서도원·도예종 등 인혁당 관련자 7명, 이철·유인태·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게 각각 사형이 언도되었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7일 2심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 도예종·서도원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18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이란 비난이 고조되었다.

나. 의혹 및 쟁점

1) ‘인혁당재건위’는 실재했는가?

- 박정희대통령의 4.3 특별담화에 ‘인민혁명’이란 용어가 적시된 상태에서
- 여정남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도예종 등 1964년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인혁당재건위’를 조직재건이 완료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했지만
 - 서로 잘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인혁당재건위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수사과정에서 이름붙인 것으로
 - 재판과정에서 단일조직의 결성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단체’ 등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대법원에서 ‘인혁당재건단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성격 규정된 것일 뿐
 - ‘인혁당재건위원회’라는 단체의 실재를 입증할 물증이나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자백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 따라서 8명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한 세칭 ‘인혁당재건위’란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의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명칭은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의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다.

2) '인혁당재건위'는 국가변란을 기도했는가?

-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중 경북 출신 인사들은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 이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가 구성되자 경북민수협을 구성하여, 서도원·도예종·하재완·송상진·전재권 등은 운영위원으로, 강창덕은 총무위원장, 이재문은 대변인으로 각각 활동하는 등 박정희 출신지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 인물들로서
- 1971년 8월의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 1월의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 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박정희활동 내지 반정부활동일수는 있어도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3) '인혁당재건위'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는가?

-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등 대구에 거주하는 일부 인사들이 1973년 11월과 1974년 3월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시위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여정남에게 주는 등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깊이 관계하였고

- 서도원·하재완 등이 여정남을 서울의 이수병에게 보내 서울지역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 여정남이 이철·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관련자들도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수사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 4) ‘인혁당재건위’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는가?
- 1972년 2월 하재완은 송상진의 도움을 받아 20여일에 걸쳐 북한 방송을 청취하면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노트에 받아 적었고, 서도원 등 일부 혁신계 인사들이 이를 돌려 본 것은 사실이지만
 - 군대시절 북한방송을 녹취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특무대 중사 출신의 하재완이 전역 후에 주위의 혁신계 인사들이 이북의 통일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자 이를 받아 적은 것으로
 -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들이 이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도 지령수수의 방식이 통상적인 남파공작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때와 같이 A-3단파라디오를 통해 암호문을 수령하여 난수표를 통해 해독하는 것이 아닌 당대회보고문을 청취한 것을 지령수수로 본 것이고, 그 내용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령으로서의 구체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북한의 공작금이 인혁당 재건위에 흘러 들어갔다는 일부 전직 중앙정보부원들의 주장은 김배영의 자금이 강무갑을 통해 이수병에게 전해졌다는 것인데, 이미 1974년도에 조사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의 공소장에서도 빠진 것이며

- 하재완 등이 북한방송을 녹취하여 주변인사들과 돌려 본 행위는 당시의 법체계 상 반공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지만

- 이 노트가 빌미가 되어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유일한 물증이 되어 여덟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수사와 반공법·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권력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5)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하여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됨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중,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 서울 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

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음

- 당시 담당검사 송중의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용택·윤종원, 파견경찰 손중덕·박재명·신홍수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3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 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장석구의 의문사 사건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6) 공판조서는 변조 되었는가?

- 민청학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대신문 기회와 증인신청의 봉쇄, 진술기회의 제한, 가족 접견 금지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였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방어권의 침해를 넘어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 「진실위」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977년 12월 29일 작성된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내사 결과보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공판조서 변조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와 관련자 가족 15명 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 조사하였는데

- 연행조사의 목적이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으며

- 공판조서 변조 의혹의 진원지는 공판조서를 열람한 두 변호사로서, 특히 조승각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X 표시를 하여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 가족들에게 교부하였으며

- 조승각·김종길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즉,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검찰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다.

- 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대법원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판결에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7) 사형집행을 둘러싼 의혹

가) 사형집행의 배경

○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형벌로 반유신운동을 탄압하려 하였다. 그 결과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아 모두 14명이 사형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 13명,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28명에 이르는 등 중형을 언도받았다.

○ 1974년 12월 16일 유신정권은 당시 반유신운동의 선두에 서 있던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을 받은 22살의 대학생 김병곤이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조롱한 것처럼 유신정권의 엄벌정책이 반유신운동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 1974년 8월 15일 재일동포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이 발생하여 육영수 여사가 피격사망하자 박정희는 동정여론에 기대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하였지만, 구속자들을 석방하지는 않았다.

- 1974년 7월 11일의 1심에 이어 9월 7일의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도 사형 등 중형이 변함없이 언도되자, 바깥의 가족들도 박정권이 실제 이들을 처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고문 등에 의한 조작의혹을 주장하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 오글 목사가 추방당하였다.
- 한편 1974년 8월 22일 신민당 전당대회는 선명야당을 표방한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였고, 다음날 한국일보 기자들 또한 민주언론 사수를 선언하는 등 전국 31개사의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통제를 거부하고 자유언론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반유신운동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 1974년 11월 18일 문인 101명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선언을 발표하였고, 11월 27일에는 윤보선·함석헌·유진오·이희승·이병린 등 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71명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반유신 연합전선이 결집되어 갔다.
- 1974년 12월 16일 유신정권은 당시 반유신언론의 선두에 서 있던 동아일보에 대해 사상 초유의 광고탄압을 가하여 백지광고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자발적인 의견광고를 보내 자유언론을 지원하였다.
- 반유신운동이 강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5년 1월 22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월 12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찬반토론은 일체 허용되지 않은 채, “유신체제 반대하면 붉은 마수 밀려온다”라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찬성 73.1%의 결과를 보였다.

○ 국민투표를 이용해 명분을 찾은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2월 15일 구속인사의 석방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 사형수들은 석방되었지만, 인혁당 관련자들과 학생 신분이 아닌 민청학련 핵심관련자들은 석방에서 제외되었다.

○ 2·15조치로 석방된 김지하는 동아일보를 통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행된 고문에 대해 폭로하여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2월 21일 문화공보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최근 석방된 자들은 긴급조치가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자들이나 “이들이 형무소를 나올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면 “민청학련 사건은 이들(인혁당)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 명백한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들을 동지나 애국인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에 안걸리는가, 법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냐”며 매우 격앙된 어조로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혁당이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조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질책이 있는 직후인 1975년 2월 24일 황산덕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적 견해를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인혁당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와 방침을 밝힌다’고 전제하고

—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1962년 1월 조직한 지하당으로 김은 그 후 1962년 5월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했고, 당시 재정책임이었던 김배영이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 인혁당이 김일성의 지시로 북괴간첩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박정희 대통령과 황산덕 법무부장관의 발표는 1964년의 인혁당 사건의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북한의 조종을 받은 지하당으로 인식 되었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피고인 22명 전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도예종·서도원·이수병·송상진·하재완·김용원·우홍선·여정남 등 8명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1974년 4월 체포된 이후 단 한 번도 가족들과 면회를 하지 못했다.
- 사형선고 이튿날인 1975년 4월 9일 새벽 4시 55분 서도원을 시작으로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 당시의 신문은 사형수들이 대부분 종교의식을 거부하였으며, 도예종은 “조국이 공산주의 아래 통일되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진실위」의 조사결과 사형수들의 최후 진술(유언)은 사실과 다르게 사형집행명령부에 기재되었는데, 이 같은 조작된 유언을 언론에 공개하여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로구나 하는 여론조작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나) 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유는?

-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1975년 4월 8일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가 발동되었는데, 이 조치는 군을 동원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를 명하는 것이었다. 1개 대학의 휴교조치를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지시할 정도로 유신정권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 같은 날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의 합동의원총회는 “한반도가 사실상 전쟁상태”라면서 인도차이나 정세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망국적 언동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현행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통상 형 확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전례가 없는 일로서,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 국제법률가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 전격적인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사전에 국방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형 확정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

8) 고문흔적은폐를 위해 시신을 탈취했는가?

○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년 4월 10일 송상진과 여정남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 없이 벽제화장터에서 강제 화장하였는데

○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처리된 것은 고문 상처의 은폐보다는 응암동 성당 등에서 합동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전격적 사형집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표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 국가기관이 가족의 의사에 반해 크레인까지 동원하여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인도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였다.

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소결

○ ‘인혁당 재건위’ 조직결성 여부와 관련

- ‘인혁당 재건위’의 조직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지역 지도부 간의 위상 및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는 증명 불가능함
- 다만,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토론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졌음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음
-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중정의 주장은 하재완 노트에 불과하고 평양방송의 내용을 지령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임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강압적인 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 중앙정보부가 초기부터 ‘인혁당 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 종결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함

○ 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들을 부당한 군사법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처단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국가 폭력행위임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 공판조서는 심문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음

○ 확정판결 18시간만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고, 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 조작된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용공성 부각 등 언론의 여론조작에 동원되었음

-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중앙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들을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가 되었고

IV. 결론 및 의견

1. 결론

- 1964년의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 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
- 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고
 - 일단 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되어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公安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가 되었고

○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 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며

○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서클 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내 민주화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 또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의 존립 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분행위는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겠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율 한다 해도 최고 징역 1-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씩이나 사형에 처한 조치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2. 의견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는데, 이제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지만,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써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부단히 자기반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명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협의회의
인혁당·민청학련사건 조작사실 발표를 환영한다!
이제 법원의 재심개시로 사법적 명예회복을 할 때이다!

수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일시 : 2005년 12월 7일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016-706-8105)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협의회(위원장 오충일, 이하 진실위)는 지난 1974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을 미리 결정, 집행된 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혁당 사건은 소위 “인혁당재건위”가 당시 유신반대시위를 이끌던 민청학련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를 씌워,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던 사건으로, 관련자 23명중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1975년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자, 결정 18시간만에 8명 전원을 사형시킨 사건으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인혁당 관련자 8인의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이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국정원 진실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고문과 날조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발효한 이래, 국가기관에서 두 번째로 발표한 것임과 동시에, 당시 사건조작의 주체였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을 밝혀 발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반성의 자세로, 인혁당 사건 외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시절 저지른 수많은 조작사건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이다.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과거사청산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이제라도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인혁당 사건의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건을 조작한 것은 중앙정보부이지만,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부끄럽고 끔찍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과 인혁당 대책위는 지난 2002년 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심 개시여부조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발표가 난 마당에, 재심개시를 늦출 이유가 없다. 법원은 올해 안에 인혁당 사건의 재심개시를 결정하고, 재심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30년 전 형장에 이슬로 세상을 떠난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선생 등 여덟 분. 지독한 고문의 후유증과 육고로 고생하시다가 '국정원의 고백'도 보지 못하신 채 돌아가신 장석구, 전재권, 이태환, 정만진, 이재형, 유진곤, 조만호 선생. 또, 십수년 육고를 치루고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신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성재 선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번 국정원의 발표로 지난 30년간 유족들과 관련자들이 흘린 눈물과 가슴속에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 그동안 그들이 겪은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고백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니, 사법적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를 비롯하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왔고, 유족·관련자들은 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국정원 앞에서 노구를 이끌고 '투사'가 되어 살아왔던 유족들과 관련자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의 과거사청산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받아야 하고,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 명백한 조작사실을 앞에 두고도, 보수 언론과 수구 세력들은 과거사청산 작업을 두고 남남분열이니, 국력낭비니 따위의 소리를 떠들어 덜 것인지 궁금하다. 가장 처참한 사건 중의 하나인 인혁당 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모든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이 규명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은 더욱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5. 12. 7.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